



저출산 관련 지표의 현황과 시사점

박선권*

NARS 현안분석 vol. 58 | 2019년 6월 4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김하중 | www.nars.go.kr

- I. 서론 · 01
- II. 한국의 저출산 현황과 외국과의 비교 · 01
- III. 진단 및 평가 · 12
- IV. 시사점 · 14

정부는 2004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뒤, 2006년부터 3차에 걸친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14년째 지속되는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 출생아수 326,900명을 기록하는 등 초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그 원인과 대응 방향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혼인·출산 관련 지표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 그 실태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보았다.

첫째,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구조화된 초저출산 상태의 지속으로 한국사회가 수축사회로 본격 진입하게 됨으로써 사회시스템 전반의 수정이 국가적·사회적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둘째, 흔히 저출산의 원인으로 거론되어 왔던 비혼·만혼 그 자체는 범세계적 추세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한국의 구조화된 초저출산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셋째, 외국과의 비교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세계 최저의 비혼 출산 비율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넷째,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의 저출산 대응은 혼인율의 유지·상향과 출산 선택의 확대 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혼인·출산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과 실질적인 양육부담 완화를 지향해야 한다. 다섯째, 이와 같은 정책들은 혼인과 출산이라는 삶의 단계마다 적령기 청년들이 겪고 있는 불균등한 제약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I 서론

- 정부는 2004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였으며, 2006년부터 3차에 걸친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저출산 대응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재구조화를 추진해 왔고, 그 결과로 패러다임 전환, 정책 변화 방향, 기존과제 정비 및 핵심과제 발굴, 중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시스템 개편 등을 포괄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에 있음¹⁾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 주도 출산정책	⇒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람중심 정책
정책 변화 방향	목표	출산율·출생아수	⇒	2040세대의 삶의 질
	접근방식	출산장려 캠페인 → 국가주도 인식개선		제도·구조 개혁 → 개인의 합리적 선택
	타깃대상	육아기 부모 / 저소득 위주		청년, 아동, 여성 행복 중산층, 소계층
	정책	주안점 보육		주거, 일·생활균형(워라벨) 강화 / 모든 출생 존중

- 그러나 14년째 지속되는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의 개선·강화에도 불구하고,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 출생아수 326,900명을 기록하는 등 2015년 이후 초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그 원인과 대응 방향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함
- 이에 본 보고서는 혼인·출산 지표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저출산 실태를 살펴보고, 저출산 대응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II 한국의 저출산 현황과 외국과의 비교

1. 한국의 저출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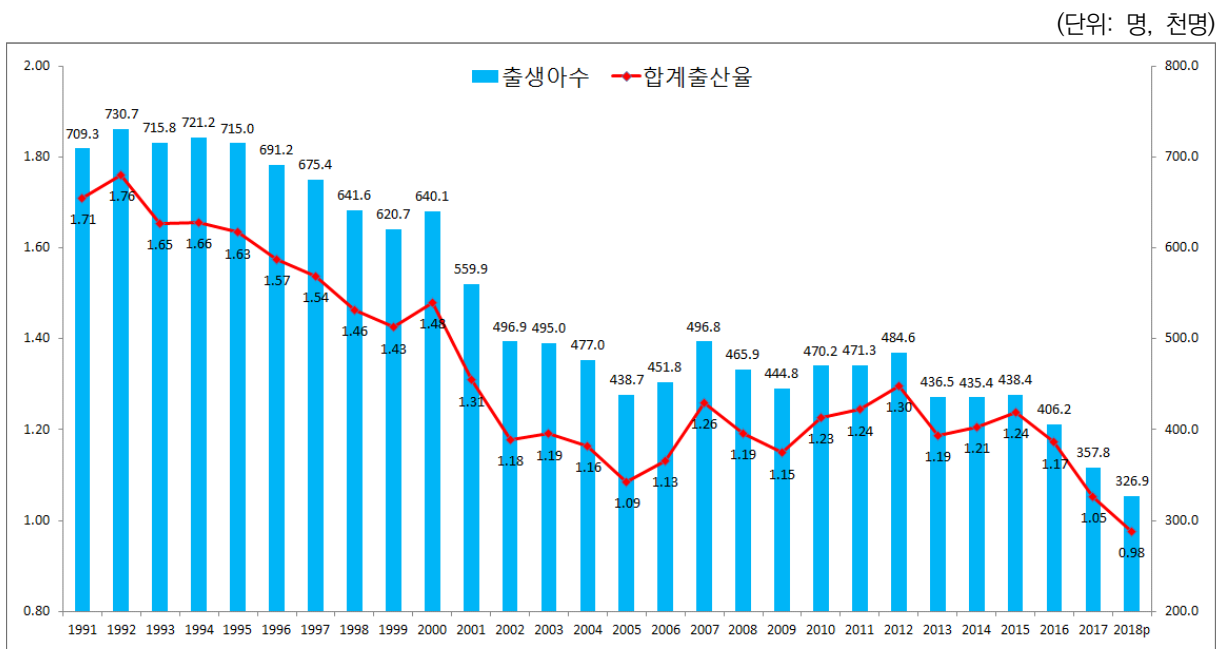
가.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 한국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는 지난 28년간 하향 추세에 있음([그림 1] 참조)
 - 합계출산율은 2002년부터 18년째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 상태에 있음
 - 1991~1995년간 1.6명을 상회하고 있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감소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함
 - 1997년 외환위기 시점 1.54명에서 2002년 1.18명으로 5년 만에 0.36명이 급감함

1)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https://www.betterfuture.go.kr/>);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2019.2.

- 2002년 처음 초저출산 상태에 들어선 이후 1.1~1.3명 사이에서 증감을 보이다가 2015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해져 2018년에는 0.98명으로 하락함
- 출생아수는 2017년부터 30만명대에 진입함
 - 1991~1995년간 70만명을 상회하고 있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감소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함
 - 1996년 60만명대, 2001년 50만명대. 2002년 40만명대로 하락했고, 2017년부터는 30만 명대로 급락함
 - 2017~2018년의 출생아수는 1991~1995년 대비 ½ 수준임

[그림 1] 연도별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추이(1991-2018)



주: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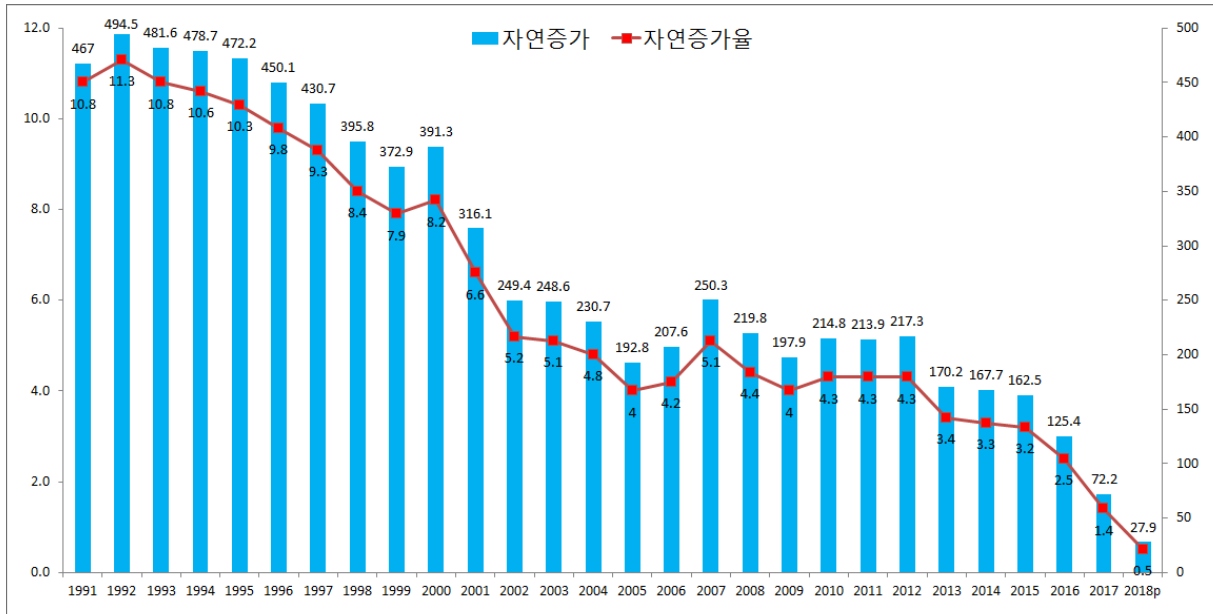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18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2019.02.27.

나. 자연증가

- 한국의 인구변천은 자연증가가 자연감소로 전환되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음([그림 2] 참조)
 - 자연증가 규모는 1991~1997년간 40만명대에서 1998~2001년간에는 30만명대로 하락했고 2017년부터는 10만명 이하로 급감함
 - 자연증가율도 1991~1995년 10명 이상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급감하여 2018년 1명 이하로 하락함
 - 이와 같은 추세를 고려할 때, 금년(2019년)에는 자연증가가 자연감소로 반전될 것으로 보임

그림 2 연도별 자연증가, 자연증가율 추이(1991-2018)

(단위: 명, 천명)



주: 자연증가율은 인구 1천 명당 자연증가(출생-사망)를 말함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18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2019.02.27.

2. 외국과의 비교²⁾

가.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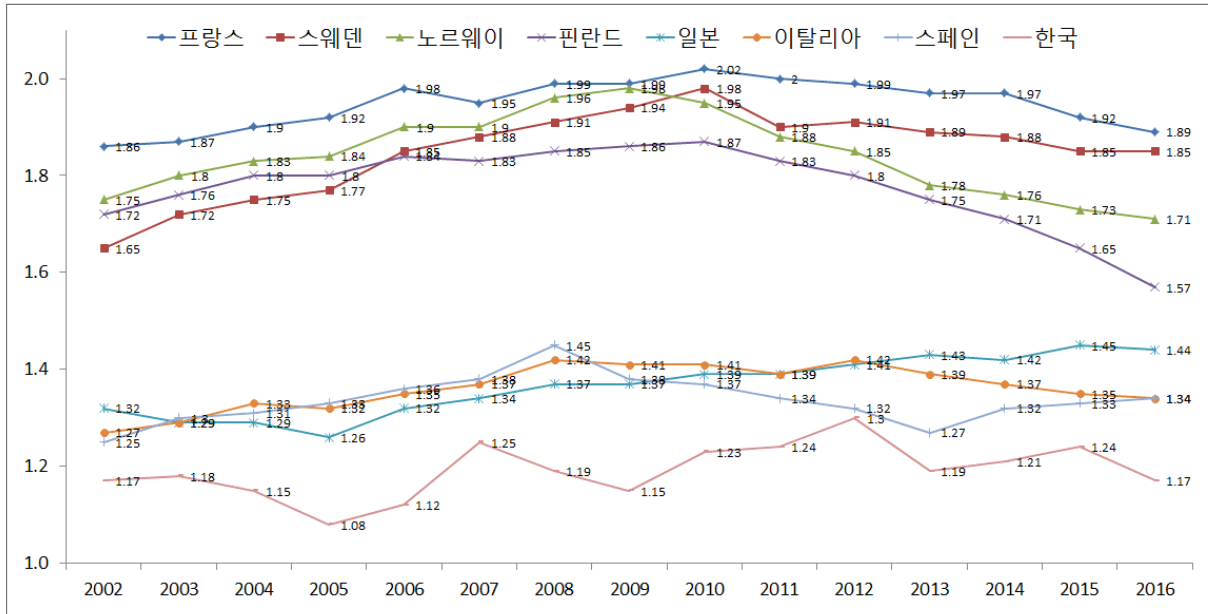
- 2002~2016년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8~1.30명 사이에서 증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들 중 가장 현저한 초저출산 양상을 보이고 있음(그림 3) 참조)
 - 15년간 한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19명이었는데, 이는 자료가 확인되는 52개국 중 유일하게 1.30명 미만인 사례였음³⁾
 - 15년간 대표적인 고출산 국가들인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각각 1.95명, 1.85명, 1.84명, 1.78명이었음
 - 15년간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인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각각 1.37명, 1.36명, 1.34명이었음

2) 이하에서는 동성의 동반자관계를 혼인관계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민 결합(civil unions)을 포함하고 있는 뉴질랜드, 골란고원·동예루살렘·정착촌 등의 문제가 있는 이스라엘, 영유권 문제가 있는 터키, 그리스, 키프로스 등의 자료가 제외되어 있음.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최종검색일 2019.4.22.

3)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최종검색일 2019.4.22.

[그림 3]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추이(2002-2016)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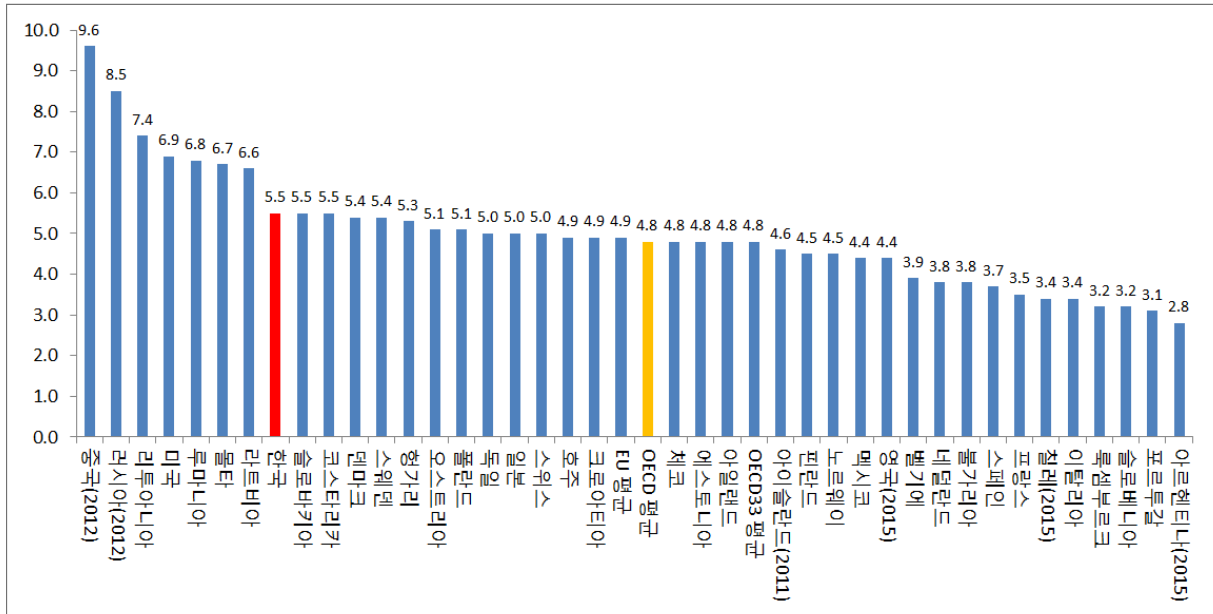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최종검색일 2019.4.22.

나. 혼인, 이혼

- 2016년 현재 한국의 조혼인율은 5.5건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음([그림 4] 참조)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4~5.5건이며, OECD 평균과 OECD33 평균은 모두 4.8건이었음
 -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칠레, 프랑스는 3.5건 이하로 매우 낮았고, 미국, 리투아니아, 러시아, 중국 등은 그 2배 이상이었음
 - 프랑스(3.5건), 노르웨이(4.5건), 스웨덴(5.4건), 핀란드(4.5건) 등은 한국에 비해 낮았음
- 2016년 현재 한국의 조이혼율은 2.1건으로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았음([그림 5] 참조)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1.6~2.5건이며, OECD 평균은 1.9건이었고 OECD29 평균은 2.1건이었음
 - 칠레, 아일랜드, 몰타, 멕시코는 1건 이하로 매우 낮았고, 덴마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미국, 러시아 등은 3건을 상회했음
 - 프랑스(1.9건), 노르웨이(1.9건) 등은 OECD 평균과 유사했고, 스웨덴(2.4건), 핀란드(2.5건) 등은 OECD 평균은 물론 한국에 비해서도 높았음

그림 4] 국가별 조혼인율(2016)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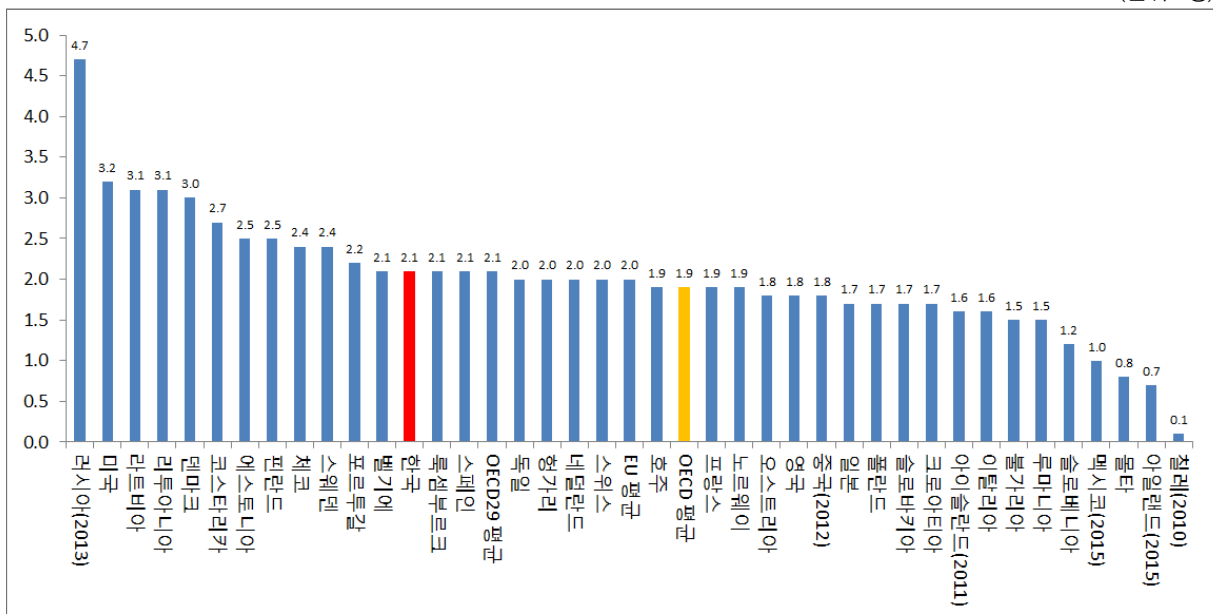


주: 조혼인율(CMR, crude marriage rate)은 연간 1000 명당 혼인 횟수. OECD33 평균은 OECD 33개국의 비가중평균 (the unweighted average)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최종검색일 2019.4.22.

그림 5] 국가별 조이혼율(2016)

(단위: 명)



주: 조이혼율(CDR, crude divorce rate)은 연간 1000명당 이혼 횟수. OECD29 평균은 OECD 29개국의 비가중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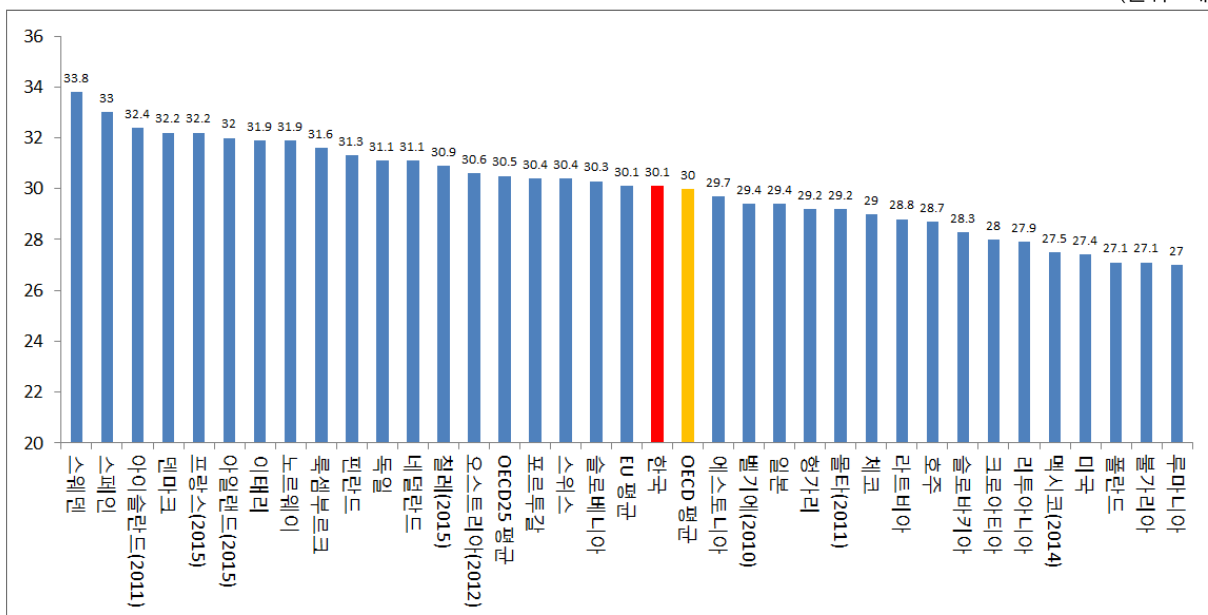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최종검색일 2019.4.22.

다. 혼인 연령

- 2016년 현재 한국 여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30.1세로 OECD 평균과 유사했음(그림 6) 참조
 - 대부분의 국가들은 27~33세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데, OECD 평균은 30세였고 OECD25 평균은 30.5세였음
 -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미국, 멕시코, 리투아니아는 28세 미만으로 낮았고, 아일랜드, 프랑스,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페인, 스웨덴은 32세를 상회했음
 - 프랑스(32.2세), 노르웨이(31.9세), 스웨덴(33.8세), 핀란드(31.3세) 등은 OECD 평균은 물론 한국에 비해 현격하게 높았음
- 2016년 현재 한국 남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32.8세로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았음(그림 7) 참조
 - 대부분의 국가들은 29~35세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데, OECD 평균은 32.3세였고 OECD25 평균은 32.9세였음
 - 폴란드, 미국은 30세 미만으로 낮았고, 프랑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이태리,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은 34세를 상회했음
 - 프랑스(34.4세), 노르웨이(34.7세), 스웨덴(36.5세), 핀란드(33.7세) 등은 OECD 평균은 물론 한국에 비해 현격하게 높았음

그림 6 | 여성 초혼 평균 연령(2016)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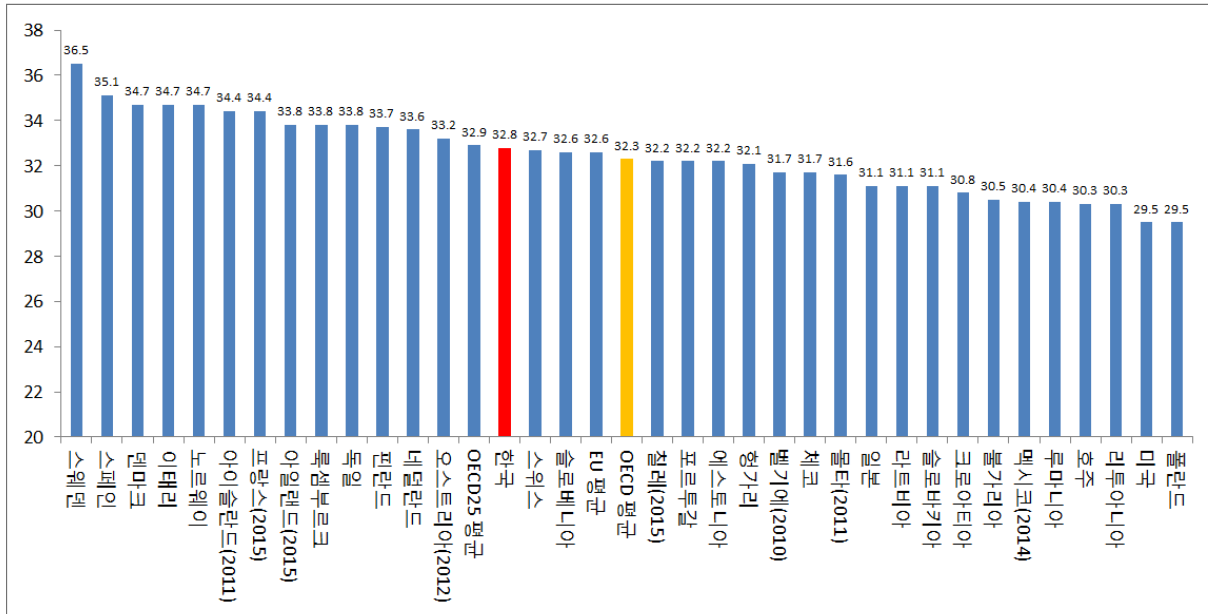


주: 영국은 동성 파트너 간 혼인이 포함되어 제외됨. 멕시코는 모든 혼인 연령 평균이고, 호주·미국은 초혼 중앙치(median) 연령임, OECD25 평균은 OECD 25개국의 비가중평균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최종검색일 2019.4.22.

그림 8 남성 초혼 평균 연령(2016)

(단위: 세)



주: [그림 6]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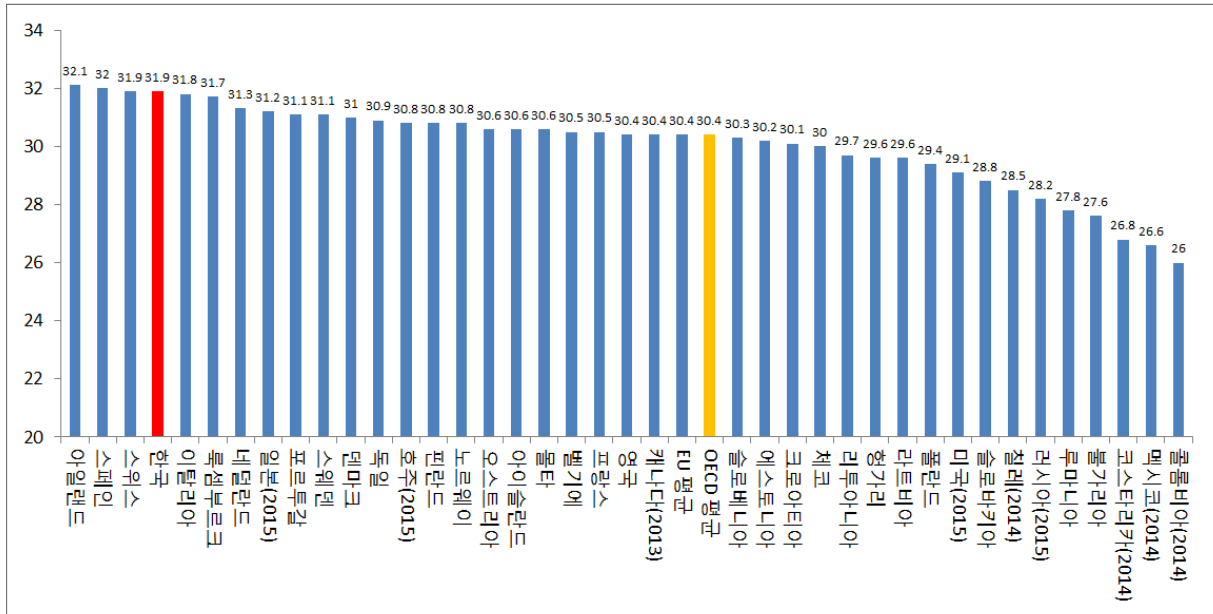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최종검색일 2019.4.22.

라. 출산 연령

- 2016년 현재 한국 여성의 출산시 평균 연령은 31.9세로 OECD 평균보다 높았음([그림 8] 참조)
 - 대부분의 국가들은 26~32세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데, OECD 평균은 30.4세였음
 -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28세 미만으로 낮았고,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는 한국과 유사한 32세 전후였음
 - 프랑스(30.5세), 노르웨이(30.8세), 스웨덴(31.1세), 핀란드(30.8세) 등은 OECD 평균 보다는 높았고 한국 보다는 낮았음
- 2016년 현재 한국 여성의 초산시 여성 평균 연령은 31.4세로 자료가 확인된 국가들 중 가장 높았음 ([그림 9] 참조)
 - 대부분의 국가들은 26~31세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데, OECD 평균은 28.9세였음
 - 불가리아, 루마니아, 미국, 라트비아, 슬로바키아는 27세 이하로 낮았고,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는 30~31세였음
 - 프랑스(28.5세), 노르웨이(29.0세), 스웨덴(29.2세), 핀란드(29.0세) 등은 OECD 평균과 유사했음

그림 8] 출산시 여성 평균 연령(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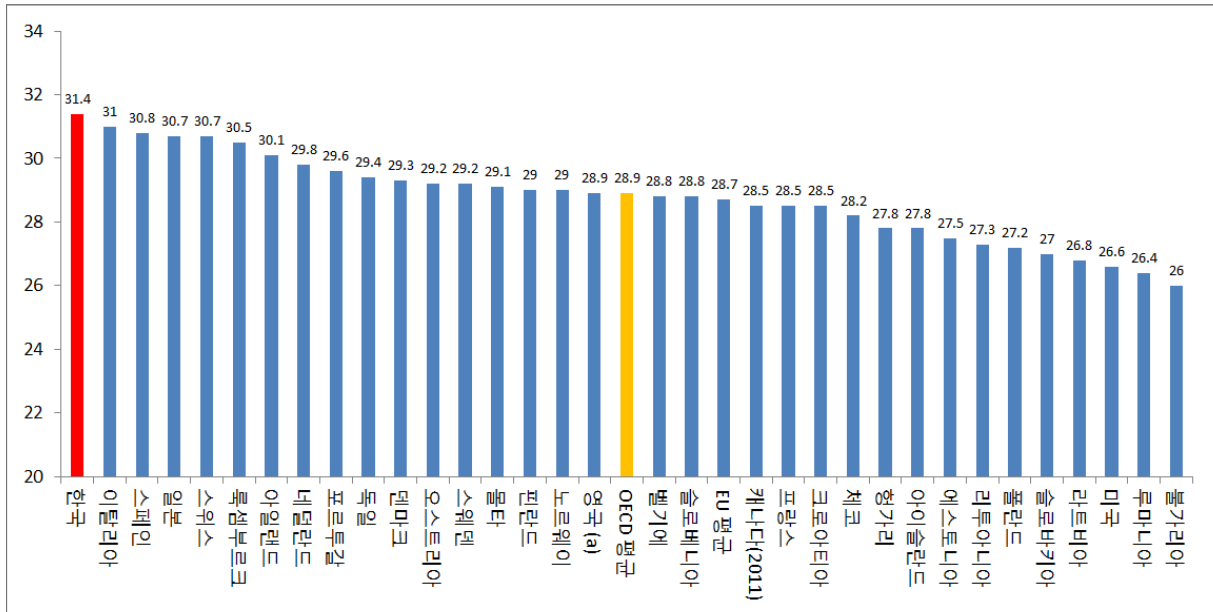
(단위: 세)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최종검색일 2019.4.22.

그림 9] 초산시 여성 평균 연령(2016)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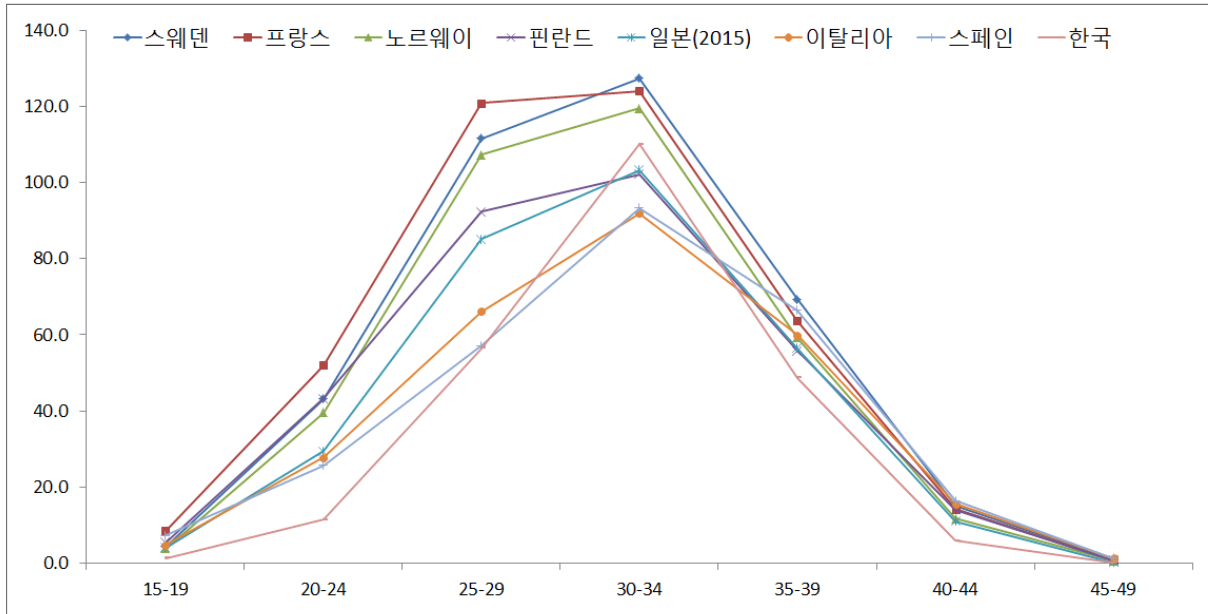
주: 영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즈만을 나타냄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최종검색일 2019.4.22.

- 2016년 현재 한국의 여성 연령집단별 출산율은 30-34세 구간을 제외하면 모든 연령 집단들에서 자료가 확인된 국가들 중 가장 낮았음(그림 10] 참조)
 - 대표적인 고출산 국가들인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은 ∩ 형태를 보이고 있음
 -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 중 초저출산 수준을 넘나들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은 ∨ 형태에 가까웠고, 일본은 그 중간적 형태를 보이고 있음. 한국은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첨예한 ∨ 형태를 보이고 있음

[그림 10] 주요국의 여성 연령집단별 출산율(2016)

(단위: 명)



	스웨덴	프랑스	노르웨이	핀란드	일본(2015)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15-19	4.4	8.5	3.9	5.5	4.1	4.8	7.3	1.3
20-24	43.1	52.0	39.6	43.3	29.4	27.8	25.7	11.5
25-29	111.6	120.9	107.3	92.3	85.1	66.2	57.1	56.4
30-34	127.4	124.0	119.4	102.1	103.3	91.9	93.3	110.1
35-39	69.3	63.6	59.2	55.8	56.4	59.9	66.4	48.7
40-44	15.0	14.2	11.7	14.1	11.0	15.6	16.5	5.9
45-49	0.9	0.8	0.7	0.8	0.3	1.3	1.3	0.2

주: 연령집단별 출산율은 5세 연령집단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최종검색일 2019.4.22.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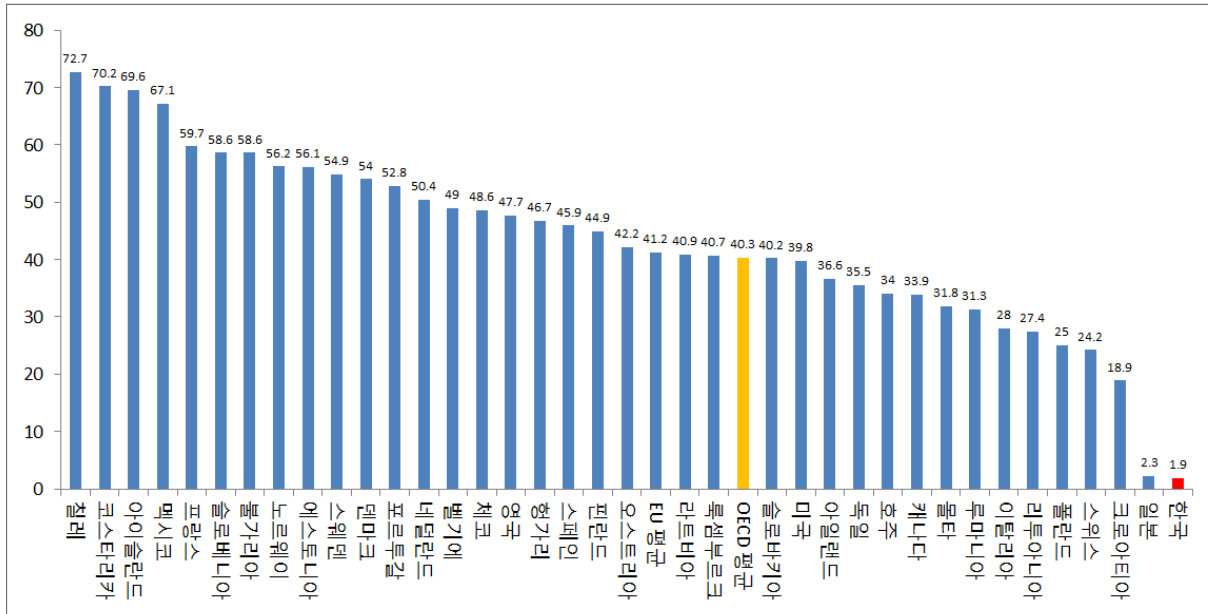
마. 비혼 출산

■ 2016년 현재 한국의 비혼 출산 비율은 1.9%로 자료가 확인된 국가들 중 가장 낮았음([그림 11] 참조)

- 다른 국가들의 비혼 출산 비율은 20~70% 사이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OECD 평균은 40.3%이었음
 - 일본은 2.3%로 한국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멕시코, 아이슬란드, 코스타리카, 칠레는 60%를 상회했음
 - 프랑스(59.7%), 노르웨이(56.2%), 스웨덴(54.9%), 핀란드(44.9%) 등은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높았음

[그림 11] 비혼 출산 비율(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단위: %)



주: 비혼 출산 비율은 출산 시점 혼인 상태가 아닌 모든 출생의 비율. 호주, 일본, 한국 등의 자료는 혼외(ex-nuptial/out-of-wedlock) 출산, 즉 자녀의 부모가 혼인 상태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출생을 말함. 여타 모든 국가의 자료는 출생 당시 여성의 혼인 여부(marital status)가 혼인이 아닌 출생을 의미함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최종검색일 2019.4.22.

3. 사회양극화와 혼인·출산 선택

가. 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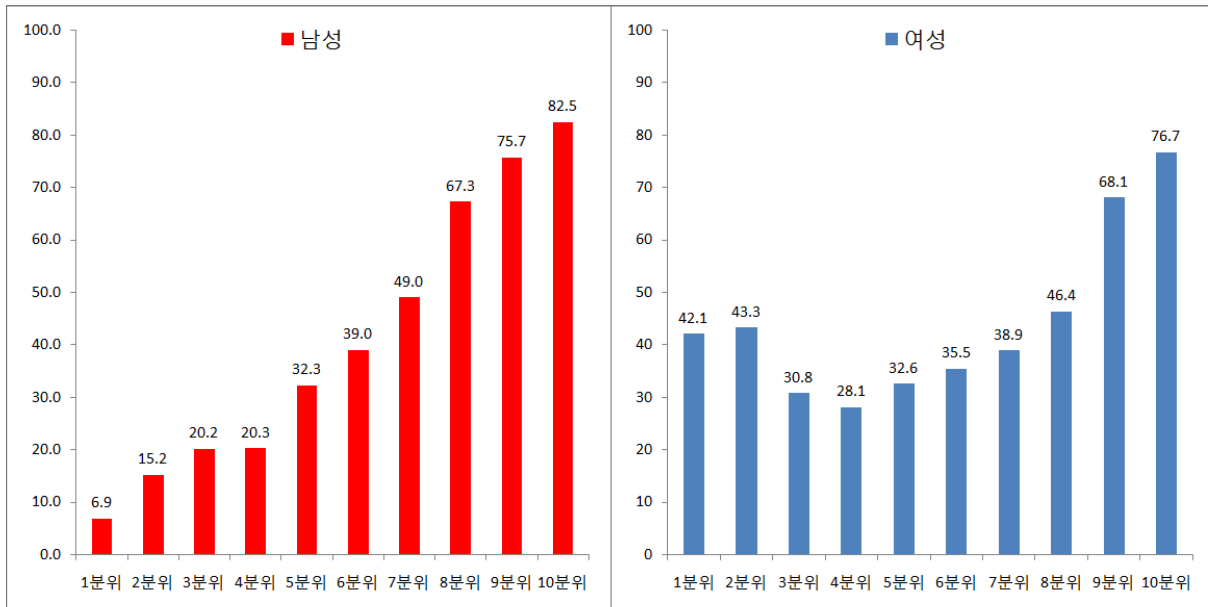
■ 2016년 현재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자 비율이 높았음([그림 12] 참조)⁴⁾

- 남성은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는 기혼자 비율이 6.9%로 가장 낮았고,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기혼자 비율이 82.5%로 가장 높았음
 - 임금수준에 따라 기혼자 비율이 정비례하는 양상을 띠는 가운데, 7분위까지는 기혼자 비율이 1/2 이하에 그치고 있는 반면 8분위부터는 2/3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둘째, 여성은 4분위를 저점으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자 비율이 높았음. 즉 4분위 기혼자 비율은 28.1%이었고, 10분위 기혼자 비율은 76.7%에 달했음
 - 1분위에서 8분위까지는 4분위를 저점으로 한 U형의 양상을 보이다가 9분위부터는 2/3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음

4) 김유선,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LSI ISSUE PAPER 제8호, 2016.11.8. 이 같은 경향은 취업여부, 고용안정성, 소득수준 등 경제적 여건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에서 거듭 확인되어 왔음. 이상호·이상현,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원인: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3호, 2011.9.; 윤자영, “노동시장통합과 결혼 이행”, 한국인구학 제35권 제2호, 2012.; 이상림, “혼인동향과 혼인이행 분석”, 보건사회연구 33(4), 2013.; 최필선·민인식, “청년층의 취업과 임금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의 응용”, 한국인구학 38(2), 2015.; 김성준, “왜 결혼이 늦어지는가?”, 노동경제논집 38(4), 2015.12. 참조

[그림 12] 임금수준별 기혼자 비율(20~30대 임금근로자, 2016.3.)

(단위: %)



자료: 김유선,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LSI ISSUE PAPER 제8호, 2016.11.8.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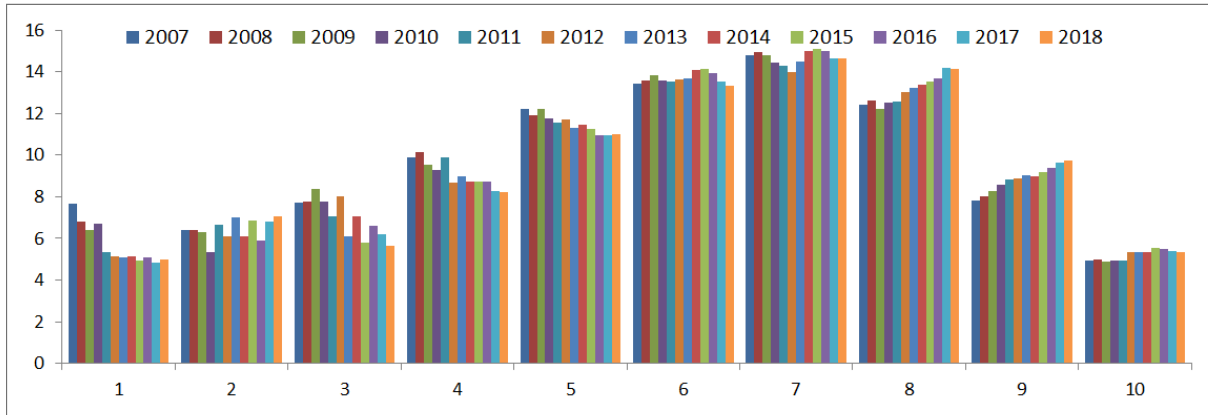
나. 출산

- 2007~2018년간 국민건강보험료 분위별 분만 건수는 소득에 상관없이 감소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저소득층에서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그림 13) 참조
 - 지난 12년간 보험료 분위 중 1분위, 3~5분위의 분만 건수 비중은 감소세가 나타나는 반면, 8~10분위 비중은 증가세가 나타남
 - 2분위, 6분위, 7분위는 다소간의 증감 현상을 보임
 - 이와 같이 전체 분만 산모 중에서 보험료 분위가 높은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진다는 것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음⁵⁾
 - 2006년과 2015년의 보험료 5분위 비교에서, 1~2분위는 비중이 감소했던 반면 4~5분위는 증가했음

5)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한 임신, 유사산, 출산 모니터링 방안”, 2016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 학술대회, 2016.10.21. p.177.

[그림 13] 보험료 분위별 분만 건수 비중 추이(2007~2018)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소득결측	2.71	2.9	3.22	5.1	5.33	5.48	5.72	4.78	5.02	5.31	5.59	5.92
1	7.67	6.78	6.42	6.68	5.34	5.16	5.08	5.13	4.94	5.07	4.85	4.99
2	6.42	6.39	6.29	5.33	6.63	6.09	7.03	6.1	6.84	5.92	6.78	7.04
3	7.7	7.74	8.38	7.79	7.08	8.02	6.08	7.05	5.78	6.61	6.19	5.65
4	9.91	10.15	9.53	9.3	9.87	8.69	8.97	8.74	8.75	8.73	8.27	8.23
5	12.2	11.92	12.2	11.74	11.58	11.69	11.32	11.43	11.23	10.94	10.94	11.02
6	13.41	13.56	13.85	13.59	13.53	13.64	13.68	14.1	14.11	13.94	13.53	13.33
7	14.8	14.92	14.78	14.42	14.27	13.97	14.5	14.98	15.09	14.97	14.66	14.63
8	12.41	12.63	12.2	12.52	12.58	13.02	13.24	13.35	13.51	13.66	14.17	14.13
9	7.81	8	8.26	8.56	8.85	8.9	9.04	8.99	9.17	9.36	9.62	9.72
10	4.96	5.01	4.86	4.96	4.93	5.33	5.34	5.35	5.56	5.49	5.39	5.33

주: 2019.3월 청구분까지의 결과임. 소득결측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보험료가 없는 대상자 수치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연도별 분만건수”, 2019.4. 재구성

III 진단 및 평가

- 거의 한 세대에 걸쳐 일관된 추세를 보이면서 진행되어 왔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의 하락으로 한국의 인구변천은 금년부터 자연감소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됨. 이는 한국사회가 구조화된 초저출산 상태에 있고, 적어도 인구변화의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급속하게 ‘수축사회’(A Shrinking Society)⁶⁾로 진입하고 있음을 뜻함
 - 1991년 이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2017~2018년의 출생아수는 1991~1995년 대비 ½ 수준으로 감소함
 - 1991년 이후 한국 인구의 자연증가는 1992년 494,516명에서 2018년 27,900명으로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음

6) Toshihiko Hara, *A Shrinking Society: Post-Demographic Transition in Japan*, Springer, 2014.; 홍성국, 「수축사회: 성장 신화를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 메디치미디어, 2018. 참조

- 한국사회에서 흔히 저출산의 원인으로 거론되어 왔던 비혼·만혼 현상은 범세계적 추세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한국의 구조화된 초저출산을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임⁷⁾. 즉, 외국과의 비교라는 견지에서 비혼·만혼 그 자체는 한국의 특수성으로 보기는 어려움
 - 2016년 한국의 조혼인율은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았고, 조이혼율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았음
 - 대표적인 고출산 국가들인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의 조혼인율은 한국에 비해 낮았고, 스웨덴, 핀란드 등의 조이혼율은 한국에 비해 높았음
 - 2016년 한국 여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OECD 평균과 유사했고, 남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았음
 -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의 초혼 연령은 여성과 남성 모두 한국에 비해 현격하게 높았음
- 한편 외국과의 비교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는 30대 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 집단에서 나타나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임. 이와 같은 연령집단별 출산율 양상은 극히 미미한 비혼 출산 비율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양육부담으로 인한 출산 선택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임
 - 2016년 한국 여성의 출산시 평균연령은 OECD 평균보다 현저하게 높았고, 초산시 평균연령은 자료가 확인된 국가들 중 가장 높았음
 - 여성의 출산시 평균 연령 및 초산시 평균 연령이 OECD 평균 연령과 격차를 보이고는 있지만 비혼 출산이 매우 적은 상태에서 초혼 평균 연령과의 시차를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임
 - 2016년 한국의 여성 연령집단별 출산율은 30-34세 구간을 제외한 모든 연령 집단들에서 가장 낮았음
 - 2016년 한국의 비혼 출산 비율은 자료가 확인된 모든 국가들과 현저한 격차를 보이면서 가장 낮았음
- 한국인의 혼인·출산 선택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그 양상은 사회계층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음. 즉, 사회양극화가 혼인 격차에 이어 출산 격차로 연속해서 중첩적인 영향을 미치고 것으로 보임
 - 2016년 현재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자 비율이 높았음
 - 2007~2018년 국민건강보험료 분위별 분만 건수 비중은 저소득층에서는 축소되고 고소득층에서는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7) OECD, SF3.1: Marriage and divorce rates, Social Policy Division – Directorate of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Updated: 25-07-2018. 참조

IV 시사점

-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구조화된 초저출산 상태의 지속으로 한국사회가 수축사회로 본격 진입하게 됨으로써 사회시스템 전반의 수정이 국가적·사회적 당면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영유아, 청소년, 청장년 등의 순으로 저연령부터 현실화되고 있는 인구급감에 따라 보육, 교육, 국방, 노동시장, 사회보험, 보건의료, 사회기반시설, 사회서비스, 재정 등에서의 축소 압력으로 사회시스템 전반의 개편이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견됨⁸⁾
- 이에 따라 사회시스템 전반의 축소 압력을 다소라도 완화하기 위한 저출산 대응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커지고 있음
 - 현 추세에 큰 변화가 없는 한, 1996년 이후의 출생 코호트들이 혼인·출산 적령기에 본격 진입하게 되는 2020년대 중반부터는 출생아수 감소가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외국과의 비교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세계 최저의 비혼 출산 비율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비혼·만혼 현상이 비혼 출산 증가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 한국사회에서의 비혼 출산은 1) 동거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문화적 경직성, 2)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출산이 초래할 비용과 위험의 가중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선택이 되기는 어려움
 - 다만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해서는 법적 혼인에 의한 가족형성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처럼 비혼 출산이 정책적 대응의 영역이 될 수 없는 상태에서 저출산 대응은 혼인율의 유지·상향과 출산 선택의 확대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세계 최저의 비혼 출산 비율은 혼인 내 출산율이 높아져야만 상쇄될 수 있는 것으로 1) 한국사회의 혼인율을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2)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육부담 완화 정책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혼인율 상향 정책은 혼인이 선택임을 전제로 하여 혼인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 실질적인 양육부담 완화는 지금까지의 양육비용 지원을 넘어서 양육비용 자체를 축소함으로써 출산포기 혹은 조기단산 요인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이와 같은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과 양육비용 자체의 축소는 국민의 저출산 관련 핵심 정책수요인 일자리, 주거, 고비용 양육체계 등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움

8) 이철희,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방향: 인구정책적 관점”, 보건복지포럼, 2018.7. 참조

- 혼인을 유지·상향과 출산 선택의 확대는 혼인과 출산이라는 삶의 단계마다 불균등한 제약을 겪고 있는 적령기 청년들의 불평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국사회에서 혼인·출산 선택은 이미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사회양극화의 영향을 받는 구조화된 선택이 되어 왔음. 이는 저출산 대응이 적령기 청년들을 동질적인 정책대상이 아닌 상이한 삶의 조건에 놓여 있는 이질적인 정책대상으로 간주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뜻함
 - 가령,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의 양적 창출·확대를 넘어 소득·고용안정·미래전망이 있는 적정일자리(decent job)의 창출·확대를 지향해야 하고, 신혼부부 주거정책은 저소득 가구들을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고비용 양육체계 개선은 세대 간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주요 기제이자 출산 선택을 앞둔 가구가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 OECD, SF3.1: Marriage and divorce rates, Social Policy Division - Directorate of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Updated: 25-07-2018.
- Toshihiko Hara, A Shrinking Society: Post-Demographic Transition in Japan, Springer, 2014.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연도별 분만건수”, 2019.4.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한 임신, 유산, 출산 모니터링 방안”, 2016 한국보건경제 정책학회 추계 학술대회, 2016.10.21.
- 김성준, “왜 결혼이 늦어지는가?”, 노동경제논집 38(4), 2015.12.
- 김유선,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LSI ISSUE PAPER 제8호, 2016.11.8.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https://www.betterfuture.go.kr/>).
- 윤자영, “노동시장통합과 결혼 이행”, 한국인구학 제35권 제2호, 2012.
- 이상림, “혼인동향과 혼인이행 분석”, 보건사회연구 33(4), 2013,
- 이상호·이상현,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원인: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17권 제3호, 2011.9.
- 이철희,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방향: 인구정책적 관점”, 보건복지포럼, 2018.7.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2019.2.
- 최필선·민인식, “청년층의 취업과 임금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의 응용”, 한국인구학 38(2), 2015.
- 통계청 보도자료, 「2018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2019.02.27.
- 홍성국, 「수축사회: 성장 신화를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 메디치미디어, 2018.


NARS 현안분석 발간 일람

호 수	제 목	발 간 일	집필진
제57호	미세먼지 행정의 현황과 개선과제	2019.5.27.	이혜경 배재현
제56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과 보완과제	2019.5.20.	정도영
제55호	조세지출예산서 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9.5.10.	이재윤
제54호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회복지증상자 처우 현황 및 향후 과제	2019.5.8.	최병근
제53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현황 및 개선과제	2019.5.3.	박혜림
제52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쟁점 및 입법과제	2019.5.2.	김주경 이재명
제51호	공원 일몰제 현황과 쟁점	2019.4.30.	김예성
제50호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절대평가 시행의 쟁점 및 과제	2019.4.3.	유지연
제49호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형사처벌의 의의와 과제	2019.3.11	허민숙
제48호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현황과 개선과제	2019.2.25	하혜영
제47호	국내·외 가족돌봄휴가제도 운영 현황 및 시사점	2019.2.22	허민숙
제46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현황 및 개선 방안	2019.2.1.	김대명
제45호	브렉시트(Brexit) 전개과정과 쟁점 및 시사점	2019.1.29.	심성은
제44호	영국 하원 선거구제 및 선거구획정 관련 최근 동향	2019.1.22.	김종갑
제43호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국내 시장 진입에 따른 쟁점과 과제	2018.12.31.	최진응
제42호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8.12.31.	전지은 김나정
제41호	3D프린팅 산업의 현황과 정책적 과제	2018.12.31.	정준화
제40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2018.12.31.	김종규
제39호	에너지 안보 관련 지표 현황과 개선과제	2018.12.28.	유재국
제38호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2018.12.27.	박충렬
제37호	수돗물 공급용 댐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환경쟁점과 과제	2018.12.26.	김경민



NARS 현안분석 vol. 58

저출산 관련 지표의 현황과 시사점



NARS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우)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02)788-4510(대)
www.nars.go.kr